협약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과 (주)아이티아이즈, 네이버비즈 니스플랫폼, (주)유비온,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 다)은 2020년 범부처 협업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사업 과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과제명 : [교육] 대학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및 확산 (지원사업명 : 범부처 협업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사업)

□ 협약당사자

- 수행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김창용)
- 위탁기관(주관): (주)아이티아이즈 (대표자 이성남)
- 위탁기관(참여) : 네이버비즈니플랫폼 (대표이사 박원기)
- 위탁기관(참여) : (주)유비온 (대표이사 임재환)
- 위탁기관(참여):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김승수)
- ※ 본 과제의 전담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 □ 협약기간 : 2020 년 5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총협약기간 : 2020년 5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성과활용기간 : 협약 종료 후 5년 이내까지)

□ 과제협약금액 : 일금 이십오억일백만육십육만칠천원 (₩2,501,667,000)

(총협약금액: 2,501,667 천원(₩2,501,667,000))

(단위 : 천원)

	구	IJĽ		현금	현 물	합 계
		과제지원금	출연금	900,000	-	900,000
2	위탁(주관)	민간부담금	지방비	-	-	-

((주)아이티 아이즈)		기업부담금	60,000	240,000	300,000
	소	ı	960,000	240,000	1,200,000
	과제지원금	출연금	165,000	-	165,000
위탁(참여)	민간부담금	지방비	-	-	-
(네이버비즈 니스플랫폼)		기업부담금	28,600	81,400	110,000
	소	<u></u> 계	193,600	81,400	275,000
	과제지원금	출연금	650,000	-	650,000
위탁(참여)	민간부담금	지방비	-	-	-
((주)유비온)		기업부담금	43,334	173,333	216,667
	소	л Л	693,334	173,333	866,667
	지원금	출연금	160,000	-	160,000
위탁(참여)	민간부담금	지방비	-	-	-
((재)전주정 보문화산업 진흥원)		기업부담금		-	-
	소	계	160,000		160,000
합 계		2,006,934	494,733	2,501,667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2020년도 범부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사 례 창출사업((교육) 대학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및 확산)과제의 효율적 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위탁기관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과제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협약의 대상 및 내용)본 협약과제의 세부 수행내용은 붙임의 수행계획 서와 같다

- 제3조(신의성실 및 청렴의무) ① 수행기관과 위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 참여하는 당사자 및 그 소속 임직원은 과제 수행 및 관리에 있어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권한과 책임)** ① 수행기관은 본 협약과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1. 수행계획서 등 협약체결을 위한 신청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 2. 과제의 협약체결 및 수행 등 전반적인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3. 위탁기관의 과제지원금·민간부담금(이하 "과제협약금"이라 한다)의 납부·사용 및 집행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4. 과제의 중간·연차·최종 등 과제수행보고서 제출·평가에 관한 사항
- 5. 과제수행 결과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과제수행 장비의 자료제공,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과제협약금의 정산 및 정산금 반납 등에 관한 사항
- 8.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인력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 9. 위탁기관의 과제협약금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10. 위탁기관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협약의 해약, 과제지원금의 환수·제 재 등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제18조의 관계법령 및 규정,본 협약에서 수행기관의 권한 및 책임으로 정한 사항
- ② 위탁기관은 본 협약과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1. 수행계획서 등 협약 체결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 2. 위탁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 3. 과제수행에 필요한 참여 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 지원
- 4. 과제협약금의 사용, 관리 및 집행실적 보고
- 5. 과제수행 현황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보고서 등 제출
- 6. 과제의 중간·연차·최종 등 과제수행보고서 제출
- 7. 과제수행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 제출
- 8. 그 밖에 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사항
- 제5조(과제지원금의 지급) ① 수행기관은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하여 협약체결 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과제지원금을 분할하여 위탁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과제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위탁기관은 수행기관에게 과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과제지원금 청구서와 통장(금융계좌)사본,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액은 과제지원비 전액이어야 하며,보험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정산종료일(협약종료일+150일 이상)까지 이어야한다. 다만,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6항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의 징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위탁기관은 과제지원비 전액에 대한 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탁기관은 제2항의 과제지원금을 포함한 과제협약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금융계좌를 개설(이하 "관리계좌"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④ 위탁기관은 납입하여야 할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 과제지원비를 지급받 기 전까지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로 예산집행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부담금 납부확약서를 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이 제출한 과제지원금의 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지급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관의 관리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탁기관의 별도 재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은 수

- 행기관으로부터 과제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위탁기관에게 과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및 기금의 변경 등 재정 사정과 과제의 규모 및 진행 정도,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과제지원 금의 지급시기 및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다.
- **제6조(과제협약금의 사용)** ① 위탁기관은 과제협약금에 대하여 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제수행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과제협약금은 협약기간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미지급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이 경우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용역 및 서비스의 공급은 협약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과제수행결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 ③ 위탁기관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관리계좌와 연결된 클린카드나 계좌이체 의 형태로 과제협약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④ 위탁기관은 과제협약금을 집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수행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위탁기관은 과제협약금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되, 보존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총 과제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 제7조(과제협약금의 관리) ① 위탁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과제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자체 수입금 등과 명백히 구분되도록 제5조 제3항에따라 별도의 계좌, 즉 관리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과제협약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8조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위탁기관은 수행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제협약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보유한 인프라 자원을 다른 위탁기관에게 제공하는 기관은 자원 총량 상당을 과제협약금 내 민간부담금 현물로 계상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 제8조(과제협약금의 정산 및 반납) ① 위탁기관은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제협약금 사용실적에 대해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때 해당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탁기관은 수행기관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서 과제협약금 정산검증을 받아야 하며, 위탁기관은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정산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정산은 과제지원금와 민간부담금 등을 합산한 과제협약금 총액에 대해 실시하고, 과제협약금의 사용 잔액과 그 발생 이자는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과제협약금에서 과제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정산금을 산정한다.
- ④ 단, 제7조 3항에 따라 출자한 현물자원이 이를 활용하는 위탁기관에서 기 인된 이유로 잔액이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반납하지 아니한다.
- ⑤ 위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산금과 그 발생 이자를 수행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 ⑥ 수행기관이 위탁기관의 과제협약금 집행내역 검증결과,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항목 등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불인정하고, 위탁기관에게 이를 정산금에 포함하여 반납하도록 정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과제협약금 불인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제18조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⑦ 수행기관은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위탁기관의 사용 잔액이 있거나 과제협약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현장검증 및 반납조치를위탁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① 위탁기관은 과제결과보고서를 협약종 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행기관은 과제실적 점검을 위해 위탁기관에게 본 과제의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수행기관은 제1항의 과제결과보고서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한다.
- ④ 과제수행결과 보고 및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8 조 또는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0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수행기관은 본 과제의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수행기관이 협약의 변경을 위해 위탁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수행기관은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거나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해 협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수행기관이 협약변경의 신청, 통보·승인 기간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위탁기관은 협약변경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과 제협약금 및 협약기간 등의 협약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수행기관과 미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1. 위탁기관의 과제협약금 용도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 우
- 2. 수행계획서 또는 위탁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 3. 제9조 제1항에 따른 과제결과보고서의 미제출로 인한 평가를 실시할 수 없 는 경우
- 4. 제9조 제3항에 따라 과제수행결과가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 5. 그 밖에 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소기의 수행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⑤ 협약변경 및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8조의 관계법령 및 규정,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1조(과제지원금의 환수) ① 수행기관은 위탁기관이 제10조 제4항의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 확인된 경우, 본 협약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과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청구 할 수 있고 위탁기관은 그에 따라 과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서 정한 수행기관의 환수청구권 또는 위탁기관의 환수의무는 제10조 제4항의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협약 기간 이후'에 발견되어 알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 ③ 본 조에 따라 수행기관이 위탁기관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과제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청구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지급받은 과제지원금 및이에 대한 환수청구일로부터 실제 반환하는 날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수행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성과물의 귀속, 관리·활용 및 이전) ① 수행기관과 위탁기관은 본 협약 과제의 성과를 공익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의 귀속·관리·활용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의 관계법령 및 규정, 또는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3조(협약 위반시 제재 및 환수) ① 수행기관은 위탁기관이 과제협약금을 목적외 용도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관계 법령 및 본 협약에 따라 과제지원금을 환수한다.
- ② 수행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제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8조의 관계법령 및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4조(과제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동의 등) 위탁기관은 수행기관이 과제수행과 성과 확산 등을 위해 과제 참여인력, 과제의 결과 및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보안관리 및 비밀준수) ① 수행기관과 위탁기관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기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6조(관련자료 제출 등) ① 위탁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본 협약과제의 수 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한다.
- ② 위탁기관은 본 협약과제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수행기관과 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아야 하며,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 ③ 본 협약서에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18조의 관계법령 및 규정은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등)① 위탁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본 협약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를 승인한 경우,이를 승계받은 기관은 본 협약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제18조(관계법령 및 규정준수 등)① 수행기관 및 위탁기관은 본 협약과제를 수행·관리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정보 통신산업진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법령,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기준,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기준,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용한다.
- ③ 수행기관은 과제의 지원 및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절차·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9조(분쟁해결) 본 협약내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이견이 있는 경우수행기관과 위탁기관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행기관 소재관할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해결한다.
- 제20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 수행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의무 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과 위탁기관이 서명 날인(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 다.

2020.05.29

붙임 수행계획서 및 관련 협약서류 각 1부



수행기관: 기관명

기관주소 주관기관:

기관명 기관주소

참여기관1: 기관명 기관주소

참여기관2: 기관명 기관주소 참여기관3:

기관명 기관주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표자명 김창용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10

(주)아이티아이즈 대표자명 이성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5층 (여의도동, 기계회관 본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 대표자명 박원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17 (11층)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6층

(주)유비온 대표자명 임재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601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표자명 김승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중노송동) 1층

